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

1999. 9 16
교육사회위원회

1. 제안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제안및회부일자

- 제안 : 1999년 8월 30일 제출
- 회 부 : 1999년 8월 30일

3. 제안이유

- 현행 교육자치법규중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유사성격 조례인
 -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
 -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
 -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합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4건의 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로 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4. 주요골자

- 수수료의 종류를 배정수수료, 시험수수료, 검정고시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로 정함 (안 제2조제1항)
- 수수료 징수금액을 정하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토록 함 (안 제4조제1항)
-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5. 검토의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은

- 개별적으로 규정 운용해 오던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4건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하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 심사자료로 제공하였던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